

[일련번호 : 5]

# 양 천 구

## 주 의 요 구

**제 목** 보조사업자 인건비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원천징수 확인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 1. 업무개요

△△과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받을 경우 같은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같은법 제128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

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자의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하고,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88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 제16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자와 근로자는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 고용보험료를 징수해야 하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운영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 양천구지부 단체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 중인 사무국장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며, 사무국장이 4대 보험가입 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시정 조치 없이 정산 승인 처리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보조사업자 상근직원 인건비 지급내역

사업연도	보조사업자	운영비	상근직원 (사무국장)	급여내역	급여합계
2024년도	▷▷▷▷▷▷▷ 양천구지부	8,500천원	1명	600천원×10개월	6,000천원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